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3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23. 9. 2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 3)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결식 아동 급식 대상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내용

- 가)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 에서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 으로 변경함
 - 서울시 결식아동 대상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단가 : 1식 기준 9,000원('24년 2. 1.일자로 8천원→9천원 인상)
- 선정기준 ※ 2024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참조
- 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대상(7개항목)에 해당하면서 가정 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정 ③ 긴급복지지원대상가정
- ④ 보호자부재 ⑤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⑥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⑦ 담임교사, 통·반장 등 추천

-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 인용조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로 변경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 ” 로,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 을 “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 으로 변경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결식 대상 아동을 서울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급식 정책과의 행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시하였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동급식 대상자 현황

○ 지원유형별 대상자 현황

(2024. 10.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단체급식소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부식지원	집밥프로젝트
2024년	1,466	820	622	24	122
2023년	1,480	822	617	41	169
2022년	1,556	812	646	98	23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